카카오톡스토어 판매자간 영업양수도 승낙 신청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카카오톡스토어 판매회원으로서 카카오톡스토어를 포함한 영업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주)카카오커머스(이하 “회사”라고 함)에게 통지하며, 승낙을 요청 합니다.

1. 톡스토어 정보

스토어명	
도메인	

2. 양도인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 기재)	
대표자명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날인)	(인) (인감증명서상 도장 날인, 서명불가) (인) (인감증명서상 도장 날인, 서명불가)
주소	
대표 카카오계정	
제출서류	양도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혹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양수인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 기재)	
대표자명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날인)	(인) (인감증명서상 도장 날인, 서명불가) (인) (인감증명서상 도장 날인, 서명불가)
주소	
대표 카카오계정	
제출서류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양수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법인 혹은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법인 혹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고1.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는 대표자인감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류 내 아래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마스킹 해야 할 항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대표자 개인의 주소 등)

4. 톡스토어 양도 효력발생 요청일자 : 20[ ]년 [ ]월 [ ]일

(1) 양도인과 양수인은 위 2. 및 3. 에 기재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영업양수도에 대한 승낙을 신청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양도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신청서와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검토가 지연되거나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양도 효력발생 요청일자에 적용되지 못하고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

5. 양도양수 효력발생 범위

(1) 양도인은 카카오톡스토어 판매자 회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및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 효력일자로 양수인에게 양도하며, 이로써 양도인은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탈퇴한다.

(2) 양수인은 양도양수 효력일로부터 카카오톡스토어 판매자 약관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데 동의하며, 카카오톡스토어 판매자 약관의 회원 당사자가 됨을 확인한다.

(3) 카카오톡스토어 판매자 약관 지위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 효력일 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양도양수 효력일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양도인은 카카오커머스에 대한 채무 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6. 채권인수

(1) 양도인은 양도양수 효력발생일자부터 발생한 구매자의 구매 결정 상품의 정산대금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2) 정산대금은 구매결정일의 익일 3영업일에 매일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본 영업양수도 승인 후 양수인은 카카오톡스토어 판매자센터를 통해 정산계좌정보를 바로 수정해야하며, 이를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양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7. 세금의 신고 및 납부

(1) 양도인 및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카카오톡스토어의 물품거래 사실에 부합하게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양도인 및 양수인은 세금의 신고 및 납부와 본 신청서에 의한 판매자 권리 의무 승계 이전의 효과는 별개임을 확인하며, 세금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8. 의무사항

(1)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권리와 의무를 양도 받은 후 즉시 카카오톡스토어 판매자센터의 판매자정보 등을 수정해야하며, 이를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한다.

(2) 양수인은 양도인이 카카오톡스토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던 서비스의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양수인의 사업 수행능력 등의 수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미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거나 안전거래가이드의 판매자 패널티 정책에 따라 카카오톡스토어 운영이 중단 될 수 있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9. 완전 합의

본 합의서는 카카오톡스토어 판매자 약관의 양도와 관련한 최종적이며 완전한 합의이며, 그 이전에 양 당사자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행된 일체의 협의 및 합의 내용을 대체한다.

10. 보증 및 면책

양도인과 양수인은 카카오톡스토어 판매자 약관의 양도 및 인수가 관계 법령 및 제3자의 법률상·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상 하자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를 면책시키고 회사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한다.

11. 관할법원

본 합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12. 기타

(1)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호간 합의 사싱에 부합하며, 의사표시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본 신청서에 대한 승인 결과를 공지, 판매자 정보변경, 전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안내한다.

(3)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본 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의 협조요청 및 기타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 이하 여백 -